

고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90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5.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5. 25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생계형 전문신고의 방지와 피신고인에 대한 부담경감

3. 주요내용

- 신고방법 중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서류정리 및 우편접수 편의제공(안 제11조)
-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를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전문신고의 방지(안 제15조)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안 별표1)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 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위반내용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하향 조정하고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보완 개정하고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토록 하향 조정하였음.

또한 신고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현실성 있는 신고기간을 연장설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을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이는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안 준칙이 2004년 12월에 권고되어 2005. 4. 4까지 1개월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이는 입법 취지를 활성화시키고 생계형 전문신고를 예방하고 피신고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심도있는 심사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함.

## 5. 질의 및 답변

- 문 : 1회용품의 사용금지 및 억제에 따른 지도단속은 하고 있는가 ?
- 답 : 2004년도에 51건이 신고접수되어 그중 24건에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은 15건에 10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문 : 내년 엑스포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숙박위생업소의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지도 단속 바람.
- 답 : 사업자, 관계인 등에 대하여 홍보·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 : 지금까지 과태료부과는 신고에 의한 부과뿐이고 행정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단속한 실적이 없다. 공무원 재량에 의거 직접 지도단속 바람.
- 답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5. 5. 25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